중대재해처벌법과
건설업이 나아갈 방향

이 은 형

eunhyung@ricon.re.kr

Contents

01 중대재해법 및 관련 현황

02 규제 vs 자율 vs 제도보완 vs 실행

03 나아갈 방향 (권리와 의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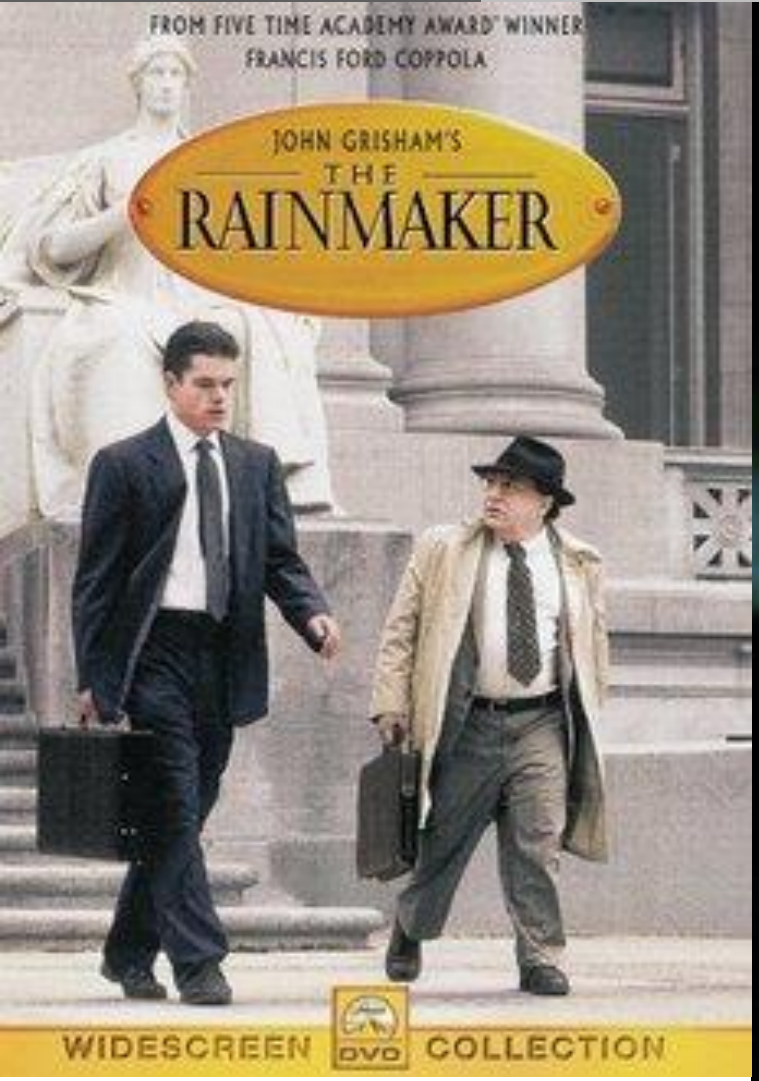
FROM FIVE TIME ACADEMY AWARD® WINNER
FRANCIS FORD COPPOLA
JOHN GRISHAM'S
THE
RAINMAKER
WIDESCREEN
DVD
COLLEC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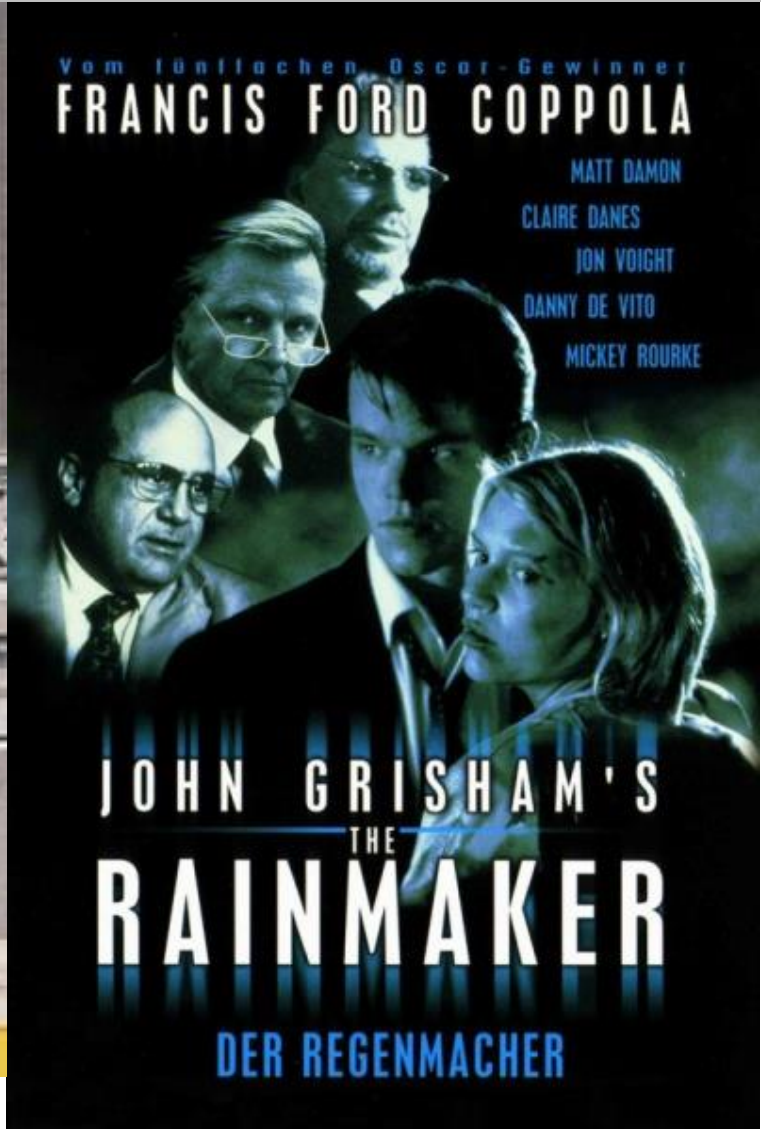
Vom fünffachen Oscar-Gewinner
FRANCIS FORD COPPOLA
MATT DAMON
CLAIRE DANES
JON VOIGHT
DANNY DE VITO
MICKEY ROURKE
JOHN GRISHAM'S
THE
RAINMAKER
DER REGENMACHER

1. 중대재해법 및 관련 현황

1. 중대재해법 현황

1) 주요 내용

-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중대재해법')
- **`21.1.26 공포 (2022. 1. 27. 시행)**

– 개인사업자/50명 미만인 사업(장)/ 50억 원 미만 공사(24. 1. 27.)

중대재해 →

- 중대산업재해
  - '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' 산업재해 중 사망/부상자
- 중대시민재해
  - 특정 원료/제조물, 공중/다중이용시설에서 재해

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→

- 사업주 or 경영책임자
  - 사업장 종사자의 유해/위험방지의무 (제4조, 제9조)
- 3자 위탁시 동일(실질적 지배·운영·관리책임시, 제5조)
- 의무위반/ 중대재해시 징역/벌금형 가능 (제6조, 제10조).

1. 중대재해법 현황

2)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란(예시)

1) 경영진의(경영책임자) 범위는? 둘 다?

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

②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
2) '실질적 지배·운영·관리'의 명확한 정의 ?

* 현재로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명백히 존재

- ex) 다수 사업장 운영시, 외주시, 전문경영인 등

**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사회적 배경은?

3-1) 대처현황

▪ 공공의 대처는 보다 구체적

공공부문 (예시)

고용노동부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

① 고용노동부

- '산재예방보상정책국'을 '산업안전본부'로 격상 (이후 '산업안전보건청')으로 독립예정)
- 건설업(`19년 총 산재사망자의 50.1%)은 전담부서 설치
-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·보건 의무 등 시행령 마련
- 감독관 수사역량 강화방안, 관련 지침/매뉴얼 마련

근로복지공단

② 근로복지공단

- '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' 개시(2.24)
- 산재판결문 2만 9천여 건 무료제공(하급심 포함)
- 매년 2천여 건 업데이트 예정

3-2) 대처현황 (cont.)

대한민국국회
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

③ 건축법 개정안 통과(2.24)

- '스티로폼 · 우레탄 샌드위치패널' 금지법
- 건축물의 내·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, 복합자재 등에 준불연(700도에서 10분 내화성능) 자재사용 의무화
- 중소/중견 제조업체들은 반발

공공부문 (예시)

국토교통부

④ 국토교통부

-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
  (발주자가 '**적정 공사비/공기**' 제공. 근재보험 의무화 등)
-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 확충, 현장점검 사업장 수 확대
- 건축자재 이력관리체계 구축계획 및 품질인정제도 도입

3-3) 대처현황 (cont.)

▪ 민간의 대처는 인력확대와 기술도입에 집중

민간부문 (예시)

· 본사 안전보건조직 확충/ 안전관리 프로그램 효율제고

- H사, 스마트건설 전담조직 신설/ HIoS · VR 안전관리 시스템'
- D사, 각 사업본부마다 품질/안전조직 신설
- G1사, 최고안전책임자(CSO) 사장급 격상
- G2사, 안전보건조직 확대(외부컨설팅)
  안전보건조직을 본사에서 사업본부로 이동
- H2사, 스타트업들과 협업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
- S사,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(보상+포상 연계)

3-4) 대처현황 (cont.)

▪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개정(완화) 추진

처벌완화	· 징역/벌금 한도 조정 (사업주/경영책임자/법인) · 의무준수시 처벌 면제 (사업주/경영책임자)
중대재해 범위축소	· 적용기한 설정 및 사망자 수 조정 · 직업성 질병자 적용규모 조정
의무축소	· '사업주의 관리상의 의무' 등을 조정
기타	· 근로자의 산재예방 의무 및 위반시 벌금 신설 · 재해예방관리비 신설 · 하수급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지급의무화(신설) · 시행유예

2. 규제 vs 자율 vs 제도보완 vs 실행

2. 규제vs자율vs실행

1) 제도적 보완이 답인가?

- 국내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산재가 반복
  - 이천 냉동창고 신축현장 화재 (`08.1)
  - 이천 물류센터 화재 (`20.4.)
  - 용인 물류센터 화재 (`20.7.)
- 사고원인은 항상 인재로 귀결

2) 그릇된 관행, 안전불감증?

- **평택 물류센터 자동차진입램프의 콘크리트 상판붕괴 사고(`20.12.20)**
  - 콘크리트 보/기둥 연결부 고정용 갭(Gap) 콘크리트 미시공
  - 철근/콘크리트 사이에 무수축 모르타르 미주입
  -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시공사 관리자가 체크못함
  - 감리자 , 세부 공정별 검측 소홀

2. 규제vs자율vs실행

2) 그릇된 관행,안전불감증? (cont)

- 실행역량이 더욱 중요한 시기
- 안전은 비가시적 지출비용을 포함
  - 인식변화만으로 감당되는가
- 안전경시는 관행때문인가?
  - 바꿀 여건 vs 이윤추구 (비용, 공기 등)
- 사측의 문제만으로 볼 수도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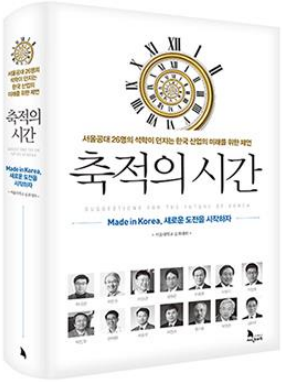

2. 규제vs자율vs실행

3) 규제 vs 자율

- **민간의 자율로 개선가능?**
  - 돈으로 충분?, 공감능력?
- **강력한 규제로 개선가능?**
  - 동기요인부여는 필수
- **Culture Code의 차이인식 필요**
  - 포드 핀토(Ford Pinto) 사건 (교훈적, 국내적용은 어려움)
  - 큰 문화적 차이

(징벌적 손해배상, 제품/인명/기업활동 등 상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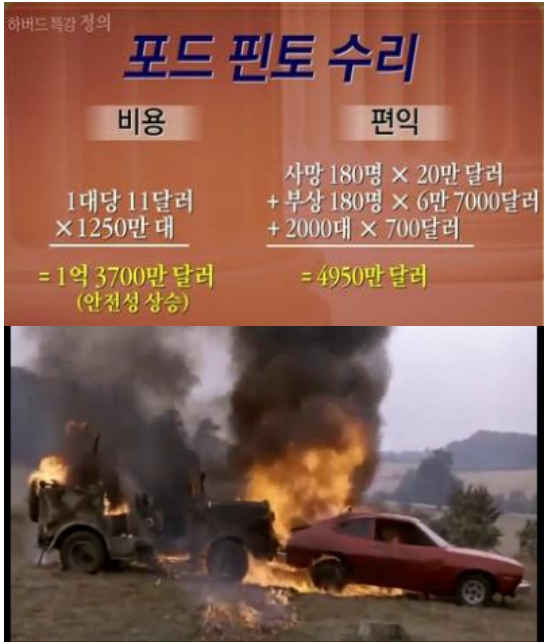

(★ 사례) 기본에 충실한 것으로 초래된 의외의 결과

건보공단 적자 확 줄었다

입력 2021-02-15 16:04:26 수정 2021.02.15 17:39:25 서지혜 기자

URL

코로나에 작년 병원 방문 줄어
당기수지 적자 2.5조 대폭 감소

< 전년(종합계획) 대비 2020년 재정현황 >

현금흐름기준, (단위 : 억원)

구 분	2020년 (A)	2019년 (B)	종합계획* (C)	전년대비 (A-B)	전년대비 증가율	종합계획 대비 (A-C)
총 수 입	734,185	680,643	739,725	53,542	(7.9%)	△5,540
총 지 출	737,716	708,886	767,000	28,830	(4.1%)	△29,284
당기수지	△3,531	△28,243	△27,275	24,712	-	23,744
누적수지	174,181	177,712	150,437	△3,531	-	23,744

* 「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(2019~2023), '19.4.30, 보건복지부」 상 '20년 재정 전망치

3. 나아갈 방향 (권리와 의무)

3. 나아갈 방향

★ 안전문화 정착환경 조성 (권리와 의무)

- ‘안전문화정착’의 1차 근간은 ‘적정공사비’
- ‘의무불이행’과 ‘편법’의 반대급부는 ‘강력한 처벌’을 전제

안전보건 관리비	· 적정 수준의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지급 – 지금은 공사비의 약 1.2~3.43%. 낙찰률 상향과 연계
가격 현실화	· 공공공사의 시설자재가격 등 현실화 – 조달청 ‘시설가격 협업TF ‘, 장기계속공사 연장 추가비 등
위험 외주화 해소	· (‘20년 기준) 30대 건설사의 안전/보건관리자 약 60%가 비정규직
잘못된 관행 근절/개선	· 저가낙찰, 공사비 미정산, 부당한 공사비감액 등은 ‘안전관리비’ 와 ‘자재 재사용‘ 등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문의 비용절감으로 연결 · 무리한 공사집행이 미연에 방지되는 시스템/관행 정착 (패널티 필수) – 극동공병단 발주공사 사례, 부적격 업체 등

(참고) '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' 관련 결과

금액 적정성	· 부족하다 (40.3%). 적정하다 (59.7%)
안전관리비 부족시	· 현장 일반관리비로 처리 (53.4%), 이윤에서 추가 지급(26.9%) 집행하지 않는다 (9.1%)
부족시 사용형태	· 필요한 항목 선별사용(80.2%), 개인안전보호구만 지급(18.8%) 개인안전보호구도 미지급 (1%)
계상금액 부족 이유	· 발주처에서 계상하는 안전관리비 요율이 낮음 (40.4%) 원도급사가 안전관리비를 적계 계상 (51.3%)
지급여부	·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지급 (6.6%)

감사합니다